거창군월성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

의안번호	2000 - 8

제안연월일 2000. 4.
제 안 자 거 창 군 수

□ 제정이유

○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이 시설한 청소년 수련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심신단련·자질배양·취미개발·정서함양과 사회봉사자로서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의 장으로 제공하기 위함

□ 주요골자

○ 명칭은 『거창군월성청소년수련원』으로 하고, 북상면 월성리에 소재토록 함(안 2조)

○ 수련원 운영은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필요시 군에서 직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직영시 공무원을 둘수있고 위탁 운영시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, 6조)

○ 수련원 시설이용시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, 생보자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할 시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)

○ 이용료 반환, 이용자 권리 및 책임,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1조 내지 14조)

○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, 자문위원회는 현행 청소년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5조)

□ 제정근거

○ 청소년기본법제26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28조

○ 지방자치법제15조

거창군월성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이 시설한 청소년수련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 및 위치) 이 수련원의 명칭은 거창군월성청소년수련원(이하 “수련원”이라 한다)으로 하며,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에 둔다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수련시설(이하“시설”이라 한다)이라 함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시설기준에 의한 수련원내 생활관, 식당, 실내집회장, 야외집회장, 체육활동장, 특성수련시설, 야영지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.

제4조(기능) 수련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1. 청소년의 심신 단련, 자질배양,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 활동
2.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교육, 연수 및 상담에 관한 사항
3. 청소년 지도자 연수 및 각종 수련거리 개발・운영・보급에 관한 사항
4. 기타 수련원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5조(운영원칙) 수련원은 법27조의 규정과 거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운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필요시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.

제6조(공무원 배치) 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직접 운영할 경우 수련원에 원장을 두며, 원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・감독한다.

② 이 경우 수련원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, 원장의 직급과 소속 공무원의 정원은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

제7조(위탁운영) ① 수련원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

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수련원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③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8조(이용자의 범위) 수련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

1. 청소년기본법에 적용을 받는 청소년 및 일반인
2. 국가 및 공공기관, 각급 학교 및 단체
3. 기타 청소년수련원 이용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이 되는 자

제9조(이용허가)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장의 시설이용허가를 받아야 하며,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은 이용개시 10일전까지 방문·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, 원장은 시설이용 7일전까지 해당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0조(이용료 등의 징수)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련비용을 징수한다

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용료를 이용 당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, 시설 이용자가 수련원의 지도자로부터 수련활동을 지도 받고자 할 경우에도 수련활동지도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.

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관련 행사는 면제
2.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국가유공자 이용 시에는 50%를 감면
3. 청소년을 위한 순수 예술활동 및 청소년단체 행사이용 시에는 50%를 감면

④ 제1항의 시설이용료 및 수련활동지도료의 기준은 【별표1】과 같다.

제11조(이용료의 반환) 납부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

1. 수련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.
2. 이용예정일 7일전까지 이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이유가

타당 하다고 인정될 때

3. 천재지변,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

제12조(이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)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.

제13조(이용제한 및 허가취소) 전염병질환자, 정신질환자 및 기타 이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 허가를 취소, 정지, 변경,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4조(이용자의 변상책임) 이용자는 시설의 이용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등 변상을 하여야 한다.

제15조(운영자문위원회 설치·운영) ① 군수는 수련원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

② 제1항의 자문위원회는 “거창군청소년위원회”가 대행할 수 있다

제16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및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〔별표 1〕

수 련 원 시 설 이 용 료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 colspan="3">기 준</th><th>금 액</th><th>비 고</th></tr>
<tr><td rowspan="3">숙박시설
(1인1일)</td><td rowspan="2">청
소
년</td><td colspan="2">단체(20인 이상)</td><td>2,500원</td><td rowspan="11">○ 1박 기준:
당일18:00～익일09:00
*식비 별도계산

○ 이용시간 구분
오전 : 09:00～12:00
오후 : 13:00～17:00
야간 : 18:00～22:00

○ 토요일 오후 및 야간, 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이용료의 20%를 가산

○ 당초허가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
'30분 미만;
기준금액의 50%추징
'30분 이상-1시간이내;
기준금액의 100%추징
'1시간 이상 초과;
매 시간마다 기준금액의 100%추징

○ 강당 냉난방시설
1회 사용시 20,000원
추가부담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개 인</td><td>3,000원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일 반</td><td>4,000원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강 당</td><td colspan="2" rowspan="3">공 연</td><td>오전</td><td>25,000원</td></tr>
<tr><td>오후</td><td>30,000원</td></tr>
<tr><td>야간</td><td>40,000원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행 사(1회)</td><td>50,000원</td></tr>
<tr><td>특별활동실</td><td colspan="3">1 일 1회</td><td>20,000원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운 동 장</td><td rowspan="2">1일</td><td>경 기</td><td rowspan="2">1회</td><td>10,000원</td></tr>
<tr><td>경 기 외</td><td>20,000원</td></tr>
<tr><td>야 영 장</td><td colspan="3">1인 1일</td><td>1,000원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수련활동지도료</td><td colspan="2">1일1인 기준</td><td>500원</td><td></td></tr>
</table>